

[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법학박사)

1. 개요

지난 2023년 10월 12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ACEM¹⁾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머신러닝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Opt-out을²⁾ 행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음. SACEM이 Opt-out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DSM저작권 지침 제4조제3항을³⁾ 이행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5-3조에⁴⁾ 따른 것임. 이 규정에 의해 저작권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사용에 필요한 복제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⁵⁾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SACEM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SACEM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거부할 의도는 없으며, Opt-out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업체들과 이용허락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임. 따라서 SACEM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SACEM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함. SACEM은 Opt-out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권리와 인공지능 개발 사이의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균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인공지능은 이미 창작자의 일상과 권리자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창작

1) SACEM(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은 1851년도에 설립된 신탁단체로 작가, 작곡가 및 음반 제작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2024년 1월 30일 현재 총 회원수는 210,800명에 달한다.

2) 저작물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제4조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와 제한

1. 회원국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와 추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a)와 제7조 제1항, 정보사회지침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a)와 (b)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과 추출물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필요한 한 보관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이 권리자에 의해,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이용 제공되는 경우에 기계가독형 수단 등,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조항은 이 지침 제3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 제122-5-3조

III. - 제2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특히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검색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수행한 텍스트 및 데이터 검색을 위해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사본 및 복제본은 적절한 보안 수준으로 저장되며 텍스트 및 데이터 검색이 완료되면 파기된다.

5) <https://societesacem.fr/actualites/notre-societe/pour-une-intelligence-artificielle-vertueuse-transparente-et-equitable-la-sacem-exerce-son-droit>

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SACEM의 발전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3. 시사점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대상에 대한 Opt-out(DSM저작권지침 제4조제3항)은 23년 12월에 잠정 합의된 EU 인공지능법(AI Act)상의 AI 개발자의 의무사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EU 인공지능법에서는 AI 개발자는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DSM저작권지침의 Opt-out을 준수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요약(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을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⁶⁾ 그러나 이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 없음.

유럽 인공지능법상의 AI 개발자의 구체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SACEM의 Opt-out에 따른 인공지능 개발자의 구체적인 실행⁷⁾과 관련된 프랑스의 사례는 국내 AI 저작권 쟁점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societe.sacem.fr/actualites/notre-societe/pour-une-intelligence-artificielle-vertueuse-transparente-et-equitable-la-sacem-exerce-son-droit>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4/01/25/ai-data-mining-french-music-collecting-society-sacem-opts-out-with-what-consequences/>

6)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박희영)”, COPYRIGHT ISSUE REPORT 2023-19. 14면.

7) SACEM의 Opt-out 선언 이후 AI 개발자가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언론보도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